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자치단체가 지방시대 시책 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조직 자율성·유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해 자치단체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설치를 자율화하고, 각종 협의규정을 폐지하는 등 자치조직권 확충을 추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별표 1 및 별표 3 제1호 삭제, 제21조 개정 등)

인구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본부 수 상한을 폐지하고,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를 폐지하여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국장급 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나. 시·도 2·3급 정원관리 기준 명확화(별표 2 제1호 개정)

서울특별시의 2·3급 정원을 법령에 명시하고, 시·도에서 2개 국(局) 이상 통합 운영 시 행정안전부 협의를 통해 2·3급 실·국·본부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함

다. 실·국·본부 기구 수 상한 폐지에 따른 특례 등 정비(별표 6 제1호 비고 제3의2호 개정, 별표3 제2호 비고 제7호 삭제, 제31의2조 개정)

1)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대비 실·국 감축운영 시에 부여했던 시·도 사업소장 및 인구 100만 이상 시(市) 본청 실·국장 직급상향 특례를 삭제함

2) 기존 실·국장급 기구수 상한 대비 20% 범위 내 운영한 전문임기제 공무원 수를 전년도 말 기준 자치단체에서 운영 중인 실·국 수의 20% 범위 내로 운영하도록 관련 근거를 변경함

라. 담당관 제도운영 합리화(제6조 개정)

담당관 설치에 적합한 분야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제도취지에 부합한 기구설치를 유도하고, 담당관 업무수행에 필요한 하부조직 설치를 위해 관련 근거를 신설함

마. 4개 시·도 소방본부장,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담당과장 직급상향(별표 2 제1호 및 제2호 개정)

소방수요가 높은 전북·충북·대구·울산의 소방본부장 직급을 상향(소방 준감→소방감)하고, 지휘체계 확립 등을 위해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담당 2개 과장의 직급을 상향함(소방령→소방정)

바. 각종 협의권 폐지 등 기타 개정사항(별표 3 제2호 비고 제8의2호 및 제9호 개정)

인구 100만 이상 시(市)의 3·4급 구청장에 대한 4·5급 보좌기구 임명 시 협의절차 및 인구 100만 이상 시 본청 4·5급 과장·담당관 임명 시 협의절차를 폐지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

제6조제4항 중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를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로, “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를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과 관련된 업무
2. 정책의 홍보 및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등에 관한 업무
3.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업무
4.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는 업무

제7조의 제목 “(기구설치기준의 적용)”을 “(인구수 산정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인구수 산정 기준) 이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는 전년도 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제9조제1항 중 “정하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도는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를 “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제21조 중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에서는”으로, “4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를 “미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한시기구: 시·도 2급 이상, 시·군·구 3급 이상
2. 소속기관: 시·도 3급 이상, 시·군·구 4급 이상

제31조의2제4항 중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기구 수”를 “제9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년도 말 기준 기구 수(제8조에 따른 한시기구는 제외한다)”로 한다.

제32조제1항 중 “제13조제1항에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한시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를 “8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기구와 한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시기구와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제32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제2항으로 하고 제2항(종전 제3항) 중 “제2항”을 “제1항”으로 한다.

제39조제1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40조제1항 전단 중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를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구의 설치 현황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를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로 한다.

별표 1을 삭제한다.

별표 2 제1호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획 담당 실장	재난안전 담당 실·국·본부장	실·국·본부장	소방 담당 본부장
서울특별시	「국가공무원 법」 제2조의 2에 따라 고 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 직공무원	1급 또는 2급 일 반직지방공무원	1급 또는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4명)	소방 정감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14명)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부산광역시		2급 또는 3급 일 반직지방공무원	2급 일반직지방공무원(1명)	소방 정감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2명)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울산광역시		2급 또는 3급 일 반직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감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2급 또는 3급 일 반직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 준감
세종특별 자치시		2급 또는 3급 일 반직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 준감
경기도		2급 또는 3급 일 반직지방공무원	2급 또는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2명, 이 중 1명은 행정(2)부지사 밑에 두는 기획 담당 실·국장)	소방 정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강원특별 자치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2급 또는 3급 일 반직지방공무원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	소방감

별표 2 제1호 비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실·국·본부 중 2개 이상의 기구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국·본부장을 2급 또는 3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직급책정에 관하여 미리 행정안전부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5. 제4호에 따라 2급 또는 3급 실·국·본부장을 두는 경우에는 2급 또는 3급 실·국·본부장을 보좌하는 3급 담당관을 둘 수 있다. 이 경우 담당관의 직명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별표 2 제2호 중 세종특별자치시 소방담당과장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담당 과장
소방정

별표 2 제2호 비고 제3호를 삭제하며, 같은 비고 제4호를 제3호로 하고, 같은 비고 제5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비고 제6호를 제5호로 한다.

별표 2 제3호 ○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제18조제3항 관련) 비고 제3호 중 “제6조제7항”을 “제6조제8항”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만 미만 시·군은 3명의 범위에서 4급 실·국장을 제외한 수만큼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7호를 삭제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8호를 비고 제7호로 하고, 비고 제7호(종전 제8호) 중 “제6호 및 제7호에도”를 “제6호에도”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8의2호를 비고 제8호로 하고, 비고 제8호(종전 제8의2호) 중 “제8호에 따라”를 “제7호에 따라”로 하고, “임명한 시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를 “임명한 시의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호 가목과 나목의 “제8호에 따라”를 각각 “제7호에 따라”로 한다.

별표 3 제2호 비고 제9호의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를 “2명(인구가 120만명 이상인 시의 경우에는 3명)의 범위에서”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의회사무기구의 설치기준

의회사무기구명	설치대상
의회사무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의회사무국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인 시·자치구,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이상이고 인구 10만 이상인 군
의회사무과	지방의원의 정수가 10명 미만인 시·군·구, 인구 10만 미만인 군

별표 6 제1호 비고 제3호 중 “실장·본부장”을 “실장·국장·본부장”으로 하고, “별표 2 제1호 비고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실장·국장”을 “별표 2 제1호에서 정한 실장·국장·본부장”으로 한다.

별표 6 제1호 비고 제3의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의2. 별표 2 제2호에서 정한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관을 1개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소의 장을 3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으며,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담당관을 1개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1개 사업소의 장을 3급 또는 4급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별표 6 제1호 비고 제4호와 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호 비고 제6호와 7호를 각각 비고 제4호와 5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제9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기구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제9조의2에 따라 운영 중인 기구는 법령 시행일 이후 지방자치단체가 이 영의 개정 규정의 시행을 위해 최초로 기구·정원에 관한 조례 등을 개정·시행하기 전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종전 협의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기구·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 종전 [별표 2] 제1호 비고 제4호에 따라 운영 중인 기구·정원은 이 영 시행일에 [별표 2] 제1호 비고 제4호에 따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 ----- ----- -----.
1. ~ 6. (생략)	1. ~ 6. (현행과 같음)
<신설>	7.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
②·③ (생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조건) ① ~ ③ (생략)	제6조(기구설치의 일반조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담당관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선 등에 관하여 기관장이나 보조기관(국장은 제외한다)을 보좌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설치하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업무를 담당하는 실장 밑에 설치하며, <u>담당관 밑에는 과를 둘 수 없다.</u>	④ ----- ---- <u>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u> ----- ----- ----- ----- -----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신설>	1. 정책의 기획이나 계획의 입안·조사·분석·평가와 행정개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신 설></u>	<u>선 등과 관련된 업무</u> <u>2. 정책의 홍보 및 언론취재의 지원, 보도 내용의 분석·대응 등에 관한 업무</u> <u>3. 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 비위 공무원의 징계 등에 관한 업무</u> <u>4. 비상대비 관련 정책의 기획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업무</u> <u>5. 그 밖에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보좌하는 업무</u>
⑤ ~ ⑧ (생 략) <u>제7조(기구설치기준의 적용) ①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증가하여 기구를 증설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시·도의 기구설치기준과 제13조에 따른 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u>	⑤ ~ ⑧ (현행과 같음) <u>제7조(인구수 산정 기준) 이 규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는 전년도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지방자치단체의 주민등록표, 국내거소신고인명부 및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이 이뤄진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u>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 수를 합산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기준으로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등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구역 개편 예정일의 바로 앞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상위 구간의 기준을 적용하여 기구를 증설할 수 있다.

1. 동일 구간에서 인구수가 2년간 연속하여 증가할 것
2. 제1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인구수를 초과할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수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설치기준에서 해당 구간의 최소 인구수의 100분의 90에 2년간 연속

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하여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별표 1 또는 별표 3의 기구 설치기준에 합치되도록 그 기구를 감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구수는 전년도 각 분기말 현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수의 평균을 기준으로 한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해당 구간의 최소인구수 +	90
(해당 구간의 최대인구수 -	$\times \frac{\quad}{10}$
해당 구간의 최소인구수)	0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도 본청에 두는 실·국·본부의 설치와 그 분장사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되, 실·국·본부의 설치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생략)

<신설>

제9조(시·도의 기구설치기준) ①

 ----- 정
한
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시·도는 재난안전 업무를 담당하는 실·국·본부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제9조의2(시·도의 기구설치기준

<삭 제>

에 대한 특례) ① 시·도는 별
표 1에 따른 시·도의 실·국·
본부 설치기준 상한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설치하
는 실·국·본부의 존속기간은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도는 제1항에 따라 실·
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에는 제2항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추가로 설치한
실·국·본부의 운영 성과를 평
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제
2항에 따른 존속기간의 연장·
삭제 또는 추가로 설치한 실·
국·본부의 폐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국·본부를 추가로 설치한
경우 그 설치 내용, 제3항에 따
른 평가 결과 및 조치 내용을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평가의 항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 ④ (생략)

<신설>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 책정 협의) 한시기구와 소속기관을 설치할 경우 소속 공무원(장과 보조·보좌기관을 포함한다)의 직급이 시·도에서는 3급 이상인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고, 시·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

----- 정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⑤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제21조(한시기구 등 설치시 직급 책정 협의) -----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도에서는 -----

군·구에서는 4급 이상인 경우
에는 미리 시·도지사(특별자치
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
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31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① ~ ③ (생
략)

④ 제3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
관과 협의하여야 하는 담당관
직위의 경우 그 정수는 제9조제
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
치한 기구 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제32조(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
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와 자치구가
아닌 구를 폐지한 시와 2개 이
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
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
상이 된 시에는 제13조제1항에

----- 미리 -----

-----.

1. 한시기구: 시·도 2급 이상,
시·군·구 3급 이상

2. 소속기관: 시·도 3급 이상,
시·군·구 4급 이상

제31조의2(전문임기제공무원제도
운영에 관한 특례) ① ~ ③ (현
행과 같음)

④ -----

-----제9조제
1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라 설
치한 전년도 말 기준 기구 수
(제8조에 따른 한시기구는 제외
한다)-----.

제32조(통합시 설치 등에 따른 한
시기구 등에 대한 특례) ① --

----- 8년의 범위에서

따른 설치기준을 초과하여 한시
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 <단서
신설>

② 제1항에 따른 한시기구와 한
시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
기한은 8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
만,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
만 명 이상이 된 시의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
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
에 따른 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이전이라도 한시기구나 한시정
원의 감축요인이 발생한 경우에
는 한시기구나 한시정원을 감축
하여야 한다.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한시기구와 한시
기구에 두는 한시정원을 둘 수
있다. 다만, 2개 이상의 지방자
치단체가 하나로 합쳐져 관할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이 된 시
의 경우에는 10년의 범위에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
는 바에 따라 한시기구와 한시
정원을 둘 수 있다.

<삭 제>

② -----제1항
에 -----

-----.

제39조(조직관리위원회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와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조직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 4. (생략)

5.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에 관한 사항

6. (생략)

② ~ ⑦ (생략)

제40조(기구·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와 매년 기준인건비 집행
현황 등 기구와 정원의 관리·
운영 현황을 해당 기관의 인터
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고, 해
당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공개 및 제출의 대
상, 시기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공개

등) ① -----

-----.

1. ~ 4. (현행과 같음)

<삭 제>

6. (현행과 같음)

② ~ ⑦ (현행과 같음)

제40조(기구·정원 운영 현황의
공개 등) ① -----
-- 제9조 및 제13조에 따른 기
구의 설치 현황과 -----

--.

② -----

한 <u>제9조의2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및 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u>	--<u>기구와 정원의 관리·운영 현황을 종합하여 공개할 수 있다.</u>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	
연 락 처	(044) 205 - 3317